

『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4월 20일

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,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(안 제11조)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(안 제13조의2)
-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

납부가 가능 하도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(안 제22조제1항)

-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 하던 것을 7월 부과 시 전액부과 하도록 개정
(안 제27조의3 제2항 제3호, 제90조 제2항 제3호 단서신설)
-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형평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 정비(안 36조제3항)
-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(안55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·지방세법시행령
- 경상북도 재정과-2746(2006. 2. 8) 지방세 조례 정비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총 채납액 1억원이상 고액·상습 채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를 신설하고,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시에 전액부과,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